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2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2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어르신을 모시고 봉양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감형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이에 효행장려금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중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건전한 효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 가정”의 정의 (안 제2조 제6호)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거주 가구

나. 효행장려금 지급 (안 제11조)

- 설·추석 명절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20만원 효행장려금 지급

다. 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안 제12조)

- 세대원 모두 서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효 가정”

라. 지급신청 방법, 중지 및 환수 (안 제13조, 제14조)

- 각 명절 당일 기준 14일 전까지 신청, 지급사유 소멸 시 지급 중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및 지급 중지·환수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행 장려금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증진 및 효행 장려 사무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음

- 본 개정안은 어르신 부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효행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제시된 법적 근거에 비추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효 가정」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6호)

- 개정안 요지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지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의 거주 가구를 「효 가정」으로 정의함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효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 검토의견 :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음

다. 효행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1조)

- 개정안 요지 : 효 가정에 매년 설·추석 명절에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검토의견 : 효행장려금의 지급 근거와 지급액 지급시기 및 소급 지

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함고 있어 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신청대리 규정 (안 제12조)

- 개정안 요지 :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검토의견 : 지급대상을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 정하되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 부양하는 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양 주체를 고려하는 취지로 이해됨

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안 제13조)

- 개정안 요지 : 신청인은 설·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14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읍·면·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전(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신청서의 제출기한, 자격 확인 주체 및 지급방법등을 규정함으로써 효행장려금 지급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바.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14조)

- 개정안 요지 :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주소변경등으로 효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

	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지급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적 재원의 적정한 집행과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타·시군 사례】

지 역 명	금 액	대 상	지 원 조 건
공주시	각 명절(설·추석) 세대당 20만원	만75세 이상 직계존속포함, 3대 이상 거주	공주시 1년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청양군	각 명절(설·추석) 세대당 20만원	만75세 이상 직계존속포함, 3대 이상 거주	청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담양군	각 명절(설·추석) 세대당 20만원	만80세 이상 직계존속포함, 3대 이상 거주	담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의령군	각 명절(설·추석) 세대당 20만원	만80세 이상 직계존속포함, 3대 이상 거주	의령군 1년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영덕군	각 명절(설·추석) 세대당 30만원	만80세 이상 직계존속포함, 3대 이상 거주	영덕군 1년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 명칭은 효행장려금, 효도장려금, 효도수당 등 사용

* 대부분 **3대 이상 동거**가구 (부양 책임 포함)를 기준
* 고령 부모 연령 (75세 이상 ~)가 포함된 가구
*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자치단체별 조례·예산에 따라 **대상 연령, 가구 요건, 지급 금액** 등 상이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및 지급 중지·환수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임

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금 지원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경로효친의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효 문화 관련 조례에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모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1】**

라. 다만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효행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햐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